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 : 남인순 · 김원이 · 김용민

백승아 · 장종태 · 전진숙

윤준병 • 박지원 • 민홍철

김남희 • 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당겨짐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이미 국가가 연금급 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

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연금급여의 안정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